사고조사분석

작성자 : 손해사정사 박한석[1)]
소 속 : 손해사정법인 가나

1 사고조사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사고조사 결과에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는 의외로 많다.

예컨대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한 것인데, 엉뚱하게도 자신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이다.

이 같이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불만이면 그 뜻을 조사 담당자에게 분명히 밝히거나 사고 경찰서 청문관실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중요한 것은 불만의 표시 또는 재조사의 요청이 아니라 잘못 조사된 사실과 그 근거 또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즉 잘못 조사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거나 질못 조사된 점에 관련된 증거 또는 정황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막연한 불만의 표시나 재조사 요청은 단순한 하소연에 지나지 않게 될 수 있

1) 경력 28년의 손해사정사로 삼성화재(주)를 거쳐 (사)한국손해사정사회 부회장, 지식경제부 정전피해보상 전문위원을 역임했고 한국소비자원 전문상담위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조정위원, 인천검찰청 부천지청 형사조정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자문위원 등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와 [스펀지]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했고 "자동차사고 이렇게 하라","보험가입전에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외 다수의 저서가 있다.

다.

그러므로 사고 조사 결과에 불만이면 사고조사가 잘못된 점, 그 이유, 근거 등을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사고 조사에 있어 한가지 생각해둘 점이 있다.

사고조사를 하는 경찰은 사고 당사자나 목격자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을 액면 그대로 적거나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사고의 원인이나 내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질문을 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 당사자에게 여러 질문을 하여 그 답변 등을 종합해보면 믿을만한 가치가 있는 말과 믿지 못할 말이 가려지게 되며, 이를 근거로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 사람의 말이 100% 믿어지는 경우는 없으며, 그 중 믿어지는 말과 믿어지지 않는 말이 있게 되고, 그 말들 중 여러 사람 얘기가 서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판단자가 그 중 사실을 선택하여 인정하게 된다.

그런데도 이러한 점 간과한 채 목격자만 갖다 대면 모든 것이 목격자 진술대로 확정되는 것으로 여기거나, 자기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억울해해서는 안 된다.

자기 주장이나 진술을 할 때에는 자기 입장이나 자기 판단에만 빠지지 말고 반대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실에 바탕한 신뢰성 있는 타당한 주장 내지 진술을 해야 하며, 그러한 주장 내지 진술은 일관되고 상호 모순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보행자가 느닷없이 도로상에 뛰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천천히(시속 10킬로미터 정도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해놓고서는 그렇게 천천히 가고 있는 경우 10미터 전방에서 뛰어든 보행자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터인데 피하지 못한 것은 한눈을 팔았거나 완전히 방심운전을 한 것 아니냐고 다그치면 전혀 할 말이 없게 된다.

하지만 사실대로 시속 30킬로미터 정도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고 했다면 현저한 전방주시태만은 아니게 될 것이며, 자기 말의 신뢰를 떨어뜨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속 30킬로미터로 주행 중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를 본 경우 충분한 거리가 아니라면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2 사고 재조사의 요청은 ?

사고조사의 재 요청은 시(광역시를 말함) 또는 도 경찰청에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경찰서의 청문관실을 이용할 수도 있다.

재조사 요청은 구두로 해도 되며, 민원 또는 진정 형태의 우편을 사용해도 된다.

재조사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개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현장조사 및 사고분석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내놓게 된다.

그런데, 사고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사고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사고현장 조사를 하는 경우 사고 당사자 쌍방이 나란히 출석해야 하고, 사고 당사자 모두 있는 가운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물론 시간 절약을 위해서는 사고 당사자가 사고현장 조사에 동시에 참여하고, 사고경위 및 내용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같은 자리에서 또는 다른 장소이되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사고조사는 사고 당사자를 각각 따로 조사한 후 필요에 따라 같이 조사하는 형태의 대질신문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사고조사의 방법은 경찰이 판단하여 선택할 문제이다.

한편 경찰의 사고조사 결과나 상대방의 인적사항, 상대방의 진술내용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이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기록 등의 열람 및 복사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서에서는 사고조사 내용에 대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 외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사고조사 기록은 나중 법원의 결정 등에 의해 열람 또는 복사가 허용된다.

3 민간 사고조사 분석 사무실의 이용은?

경찰의 사고조사에 불만인 경우, 더구나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사고원인 및 경위 등을 조사하여 검찰 또는 법원의 판단에 참고하도록 자료로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는 수 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대개 교통사고의 민간 조사분석사무실 등을 이용한다. 즉 개인의 비용을 들여 민간 전문가들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 경위 등을 밝혀내도록 의뢰하는 것이다.

민간 교통사고 조사분석사무실 등에 사고조사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함으로 1차적으로는 사고조사분석사무실 등에 상담을 해보고, 의뢰의 필요성, 비용 등을 판단하는 것이 좋다.